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29.

발 의 자 : 박완주·박홍근·김종민
박선숙·백혜련·인재근
윤후덕·이규희·기동민
박지원 의원(10명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은 공중화장실등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·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게 하면서,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·야외극장·공원 등에서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·소변기 수 합의 1.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·소변기 수 합의 1.5배~2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. 뿐만 아니라 미국·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,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·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

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·소변기 수 합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의 위임 범위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 및 제 18조).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·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, “1.5배”를 “2배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유지·관리”를 “설치·유지 및 관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<u>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·소변기 수의 1.5배 이상</u>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 <p>제18조(조례에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<u>유지·관리</u>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·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----- ----- <u>2배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조례에의 위임) ----- ----- -----<u>설치·유지 및 관리</u>----- -----.</p>